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5
------	------

제출일자 : 2020. 11. 13.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우리구 조례를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정비대상으로 선정한 한자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한자어를 인용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대상’ 으로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 순화

1) 양양 → 드높임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제5조제2호

2) 미연에 → 미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3) 해득 → 이해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2조제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 순화

1) 통할 → 총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 제2조제3항

-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5조제1항
- 2) 통산 → 합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제2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조례 소관 부서와 합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양양”을 “드높임”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해득”을 “이해”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
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득”을 “이해”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 을 “총괄” 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할” 을 “총괄” 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 을 “총괄”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 을 “총괄” 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통할” 을 “총괄” 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통산” 을 “합산”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p>1. (생 략)</p> <p>2.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 <u>양양</u>, 자원봉사, 시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p>	<p>제5조(표창장)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드높임</u></p> <p>-----</p> <p>-----</p> <p>-</p>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u>미연에</u>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p> <p>8. (생략)</p>	<p>제2조 (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 ----- ----- ----- ----- ----- ----- <u>미리</u> -----</p> <p>8.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u>해</u>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6.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이해</u>----- ----- ----- -----.</p> <p>6.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u>이해</u>----- ----- ----- -----.</p> <p>2. ~ 6.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u>통할</u> 한다. ② (생략)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 <u>총괄</u>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협회의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무를 <u>통할</u>한다.</p> <p>④ (생략)</p>	<p>제2조(협회의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총괄</u>-----.</p> <p>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회무를 <u>통할</u> 한다. ② (생 략)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 <u>총괄</u>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 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u>통할</u> 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 ----- <u>총괄</u>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 총괄--. ② (현행과 같음)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김지혜
연 락 처	2627 - 1367

관계 법령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